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핵심 Point

1. 예정신고의 의의
 2. 예정신고 대상 및 대상자
 3. 200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4.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5. 신고절차
 6. 납부·환급방법
 7.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
- ※ 이번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예정신고의 의의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각 과세기간의 최초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이렇듯 한 개의 과세기간에 두 번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수입의 평준화 및 일시납부에 따른 납세의 무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예정신고이며, 이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정부가 결정하여 예정고지·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부법 §18 ②).

2. 예정신고 대상 및 대상자

(1) 예정신고 대상

예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포함한다(부령 §64 ①). 또한, 영세율 또는 사업설비투자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이미 신고한 조기환급신고분은 예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

다(부령 §64 ② 1호).

(2) 예정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사업자이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는 예외없이 예정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에 의한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의무를 두고 있다(부령 §64 ⑤ 및 ⑥).

사업자	예정신고 대상자	
법인	법인사업자는 예외없이 예정신고의무가 있음.	
개인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 할 사업자	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한편,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였으나 이에 불구하고 동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부법 §18 ③).

3. 200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1) 유형별 신고기간 및 기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의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법 §18 ①).

유형별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기한
계속사업자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수)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9월 30일	

(2)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다음의 사유로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국기법 §6 ① 및 국기령 §2 ①).

- ① 천재·지변
-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⑥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⑧ 상기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4.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부령 §64 ②).

1.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단,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기타 참고사항
2.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5.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6.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7.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8.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변리사업 및 관세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
9.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0.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은 영세율 첨부서류(부령 § 64 ③ 및 국세청고시 제97-13호, 1997. 4. 18.) → 아래 (2) 참조
11.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2. 총괄납부사업자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3. 사업자단위신고·납부사업자는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등

(2)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국세청고시 제97-13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고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부령 §64 ⑨).

5. 신고절차

(1) 신고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의 세액을 통산하여 납부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신고서 제출방법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방문제출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우편신고방법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2006. 10. 25.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
전자신고방법	국세청 HTS(홈택스서비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6. 납부·환급방법

(1) 부가가치세의 납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부령 §64 ⑦).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2) 부가가치세의 환급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한다(부령 §65 ③). 즉, 일반환급 신고자의 예정신고분 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우선 공제되고 그러고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 환급결의하여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단, 조기환급 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부령 §72 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가산세(부법 §22)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한편,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 또는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동 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0.5%)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신고 환급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일수) × 0.0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 1%

- 신고불성실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부법 §22 ⑧).

(2) 가산금(국징법 §21, §22)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이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된 세액의 1.2%씩을 증가산금으로 징수한다.

(3) 조기환급의 배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하여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부령 §73 ②),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기환급이 배제된다.

※ 이번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구 분	주 요 내 용
1.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 개정 (부가령 §64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사건 보수료 수입금액 내역 상세 작성 【규칙 제17호 서식(1)】 · (종전):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 · (개선):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 사무보수
2. 외화획득용역 영세율범위 조정 (부가령 §26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장의 이용범위 확대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 영세율 적용 · 200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정부업무대행단체 주차장운영업 등 면세사업에서 배제 (조특령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건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 200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기 타 (200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전환 - 어독성1급인 보통 독성 농약 영세율 적용 제외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한 가축용 사료의 영세율 적용 제외